

현재

19.8.1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



총장·학장(0) → 총장·학장(0)



교수(0) → 교수(0)
(부교수·조교수 포함) (부교수·조교수 포함)



시간강사(X) → 시간강사(0)



겸임교원(X) → 겸임교원(X)



명예교수(X) → 명예교수(X)



법 적용대상 확대

고등교육법 제14조 개정으로

2019년 8월 1일부터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되면서 **청탁금지법 제2조의 공직자등에** 해당됩니다.

고등교육법 제14조(교직원의 구분)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, 부교수,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.

